

부천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년 5월 6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5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8년 5월 19일)
상정
- 제14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8년 5월 19일)
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민봉사과장 김종대)

□ 제안이유

가. 「주민등록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8422호, 2007.5.11. 공포·시행)되고,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(대통령령 제20615호, 2008.2.22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

나.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「주민등록법」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

문을 정비함.(안 제1조)

◆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→ 제36조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최근에 사고로 보상한 사례가 있는 지?	○ 2004년도에 보상한 적이 있었음.
○ 담당공무원이 변경되면 다시 가입해야 하는가?	○ 직위 포괄계약 방식임.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“원안의결”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41호
의결 년월일	2008. 5. 23 (제143회)

제출년월일 : 2008. 5. 6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주민등록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8422호, 2007. 5. 11. 공포·시행)되고,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(대통령령 제20615호, 2008. 2. 22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「주민등록법」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(안 제1조)
 -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→ 제36조

부천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”를 “부천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인감증명법 시행령”을 “「인감증명법 시행령」”으로 하고, “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주민등록법」 제36조에 따라”로 하며, “보험·공제등”을 “보험·공제 등”으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인감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”을 “인감의 신고(변경신고를 포함한다)”로 하며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“인감관련”을 “인감 관련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주민등록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”을 “주민등록의 신고(변경신고를 포함한다)”로 하고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“주민등록관련”을 “주민등록 관련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”를 “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“당해연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 하고, “범위안”을 “범위 안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당해년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“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”를 “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”로 하며, “당해 보험금액”을 “해당 보험금액”으로 하며, “징수하기 위한”을 “징수하기 위하여 채권확보 등”으로

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등”을 “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금액 등”으로 하며, “국가배상법”을 “「국가배상법」”으로 하고, “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”을 “해당 공무원에게”로 한다. 제6조의 제목 중 “보험증권”을 “보증보험증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보험증서”를 “보증보험증권”으로 하며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증보험 및 관계서류”를 “보증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천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</u>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<u>보험·공제등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</u>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가입대상)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(이하 “<u>담당공무원</u>”이라 한다)으로서 <u>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u></p> <p>1. <u>인감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 업무, 인감증명의 발급업무,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</u></p> <p>2. <u>주민등록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주민등록증 발급업무,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천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인감증명법 시행령</u>」----- 「<u>주민등록법</u>」 제36조에 따라----- ----- <u>보험·공제 등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가입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</u> -----.</p> <p>1. <u>인감의 신고(변경신고를 포함한다)</u>-----<u>그 밖에</u>----- ----- ----- <u>인감 관련</u>----- -----</p> <p>2. <u>주민등록의 신고(변경신고를 포함한다)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 밖에</u>----- ----- <u>주민등록 관련</u>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보험의 가입) ①시장은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<u>직위포괄계약방식에</u>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에 의한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<u>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</u>에서 정한다.</p>	<p>제3조(보험의 가입) ① ----- ----- --<u>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</u>---- -----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----- -----<u>해당 연도</u>-----<u>범위 안</u> -----.</p>
<p>제4조(보험료의 지급) 시장은 담당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<u>당해년도 세출예산</u>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보험료의 지급) ----- ----- ----<u>해당 연도</u>----- -----.</p>
<p>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<u>기타</u>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<u>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</u>에 그 뜻을 통지하고 <u>당해 보험금액</u>을 세입금으로 <u>징수하기 위한</u>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<u>국가배상법</u>에서 정하는 구상기준 등에 따라 그 초과액을 <u>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</u> 변상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----- -----<u>그 밖에</u>----- ----- <u>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</u>----- -----<u>해당 보험금액</u>-- -----<u>징수하기 위하여 채권확보 등</u>-----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금액 등----- -----<u>「국가배상법」</u>----- ----- --<u>해당 공무원에게</u>----- -----.</p>
<p>제6조(<u>보험증권의</u> 확인 및 관리) ①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</p>	<p>제6조(<u>보증보험증권의</u> 확인 및 관리) ①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<u>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·정비하여야 하며, <u>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보증보험증권</u>----- -----<u>그</u> <u>밖에</u>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u>보</u> <u>증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</u>----- -----.</p>